

대학원 계약학과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와 「대학원 학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학생의 정원)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의하여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산업체 등 과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교육과정의 운영은 해당 대학원에서 운영하며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수업을 전 입교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이수 인정)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입학자격 및 입학전형) ①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대학원 학칙」 제7조제1항에 의한다.

② 입학전형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실시하며 전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부담 및 학생 납부금)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또는 3자 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산업체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산업체가 직접 납부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납부할 수 없다.

제8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수업장소는 계약에 의한다.

④ 계약학과 강좌의 강의담당시수는 책임시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강의료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으나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전공이나 유사한 학과 또는 전공을 우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 신설은 계약학과 신설요구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하되, 계약 시 상호협의를 의하여 정한다.

제10조(계약학과의 운영) 계약학과의 학사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 대학원에서 수행한다.

제11조(계약학과의 폐지 등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의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의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 된 경우 해당 계약학과의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해당 계약학과로 한다.

③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해당 계약학과로 한다.

④ 상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⑥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⑦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 내외로 해당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등의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 운영계획 수립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휴학, 복학, 제적 등 학생의 주요한 학적 변동 사항
4.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내규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명대학교 제규정 및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관련 내규, 계약학과 운영요령(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포함)을 준용한다.

제14조(보칙) 계약학과와 관련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해당 대학원의 특성에 따른 세 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소관부서의 내부결재와 소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하기 이력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정 및 관리하였던 내규이나, 「규정류 관리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기획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 시행일에 '규정류'로 제정되었음

<과거 개정 이력 및 부칙>

1.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